

서울특별시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4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23일

발 의 자: 박성연, 구미경,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문성호, 박영한,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z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침수 방z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z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7조(비용 지원) ① ----- ----- ----- 전 부 또는 일부----- -----.</p> <p style="padding-left: 20px;"><u>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 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